#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96

발의연월일 : 2020. 9. 1.

발 의 자 : 김원이 · 앙이원영 · 신정훈

서영석 · 김승원 · 인재근

송재호・오영환・이성만

윤미향 · 홍익표 · 이원욱

기동민 • 박성준 • 이재정

아쥬(비) · 강민정 의원

(17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관객들이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을 직접 관람하기 어려워 문화예술계가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음. 특히 문화환경 기반이 취약한 지역 예술계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실정임.

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장기간 생활전선에 나서지 못하는 많은 전업예술인에 대한 대책과 침 체된 지역생활문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공연·전시 등의 환경에 맞추어 온라인 공연·전시 등의 플랫폼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역문

화 생태계의 영속성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6조, 제8조 및 제9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중 "생활문화시설"을 "생활문화시설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공연·전시 등의 플랫폼(온라인 공연·전시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)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의 제목 중 "우선 지원 등"을 "등에 대한 우선 지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지역"을 "지역이나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 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지역(이하 이 조에서 "문화환경취약지 역등" 이라 한다)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문화환경 취약지역"을 "문화환경취약지역등"으로, "관하여 필요한"을 "필요한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1항제7호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한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	제6조(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
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	수립 등) ①
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	
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	
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(이하	
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	
다 수립・시행・평가하여야 한	
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7.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
	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
<u>7.·8.</u> (생 략)	<u>8.•9.</u> (현행 제7호 및 제8호와
	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8조( <u>생활문화시설</u> 의 확충 및	제8조( <u>생활문화시설 등</u> 의 확충
지원) ① ~ ⑤ (생 략)	및 지원) ① ~ ⑤ (현행과 같
	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
	라인 공연·전시 등의 플랫폼
	(온라인 공연·전시 등을 위한
	것으로서 정보처리 능력을 가
	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
	말한다) 구축 및 이용 활성화

제9조(문화환경 취약지역 <u>우선</u> 지원 등) ① (생 략)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<u>지역</u>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.

③ <u>문화환경 취약지역</u>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<u>관하여 필요한</u>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
에서 지원할 수 있다.
제9조(문화환경 취약지역 <u>등에</u>
대한 우선 지원) ① (현행과 같
<u>о</u> )
②
<u>지역이나「재</u>
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
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지
역(이하 이 조에서 "문화환경취
약지역등"이라 한다)
③ 문화환경취약지역등